|  |  |  |
| --- | --- | --- |
| **개인소득세 개정 후 관련 혜택정책의 연결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16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소득세 혜택정책 연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연간 일시불 상여금,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 관련 정책  (1)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이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 등의 개인소득세 과세 밥법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당년도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간 일시불 상여금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얻은 액수에 이 통지에 첨부된 월 환산 종합소득세율표(이하 '월환산세율표'로 약칭)에 따라 확정한 세율과 속산공제액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연간 일시불 상여금 소득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도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은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중앙기업 책임자가 취득하는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이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7]118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통지 제1조 제(1)호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정책은 별도로 정한다.  2. 상장기업 지분 인센티브 관련 정책  (1)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주식매입선택권, 주식증가차액청구권, 제한부주식, 지분장려 등 지분 인센티브(이하 '지분 인센티브'로 약칭)가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35호), <주식증가차액청구권 소득 및 제한부주식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5호),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 시범정책을 전국에서 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 제4조, <지분 인센티브 및 기술투자지분의 소득세 정책 보강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101호)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지분 인센티브 소득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2) 거주민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지분 인센티브를 2회 이상 취득하는 경우 합병하여 이 통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지분 인센티브 개인소득세 정책은 별도로 정한다.  3.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소득 관련 정책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이 취득하는 중개수수료 소득은 노무보수소득에 해당되며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에서 20%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액으로 하고 소득액에서 영업원가 및 부가조세공과금을 차감한 후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의 영업원가는 수입의 25%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소득 지급 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1호)에 규정된 누계원천공제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4. 개인이 수령하는 기업연금•직업연금 관련 정책  개인이 국가에서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 도달 후 수령하는 기업연금•직업연금이 <기업연금•직업연금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103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단독으로 계산 및 납부한다. 그중에서, 월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월환산세율표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고, 분기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월별로 균등하게 배부한 후 월 수령액에 월환산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며, 연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개인이 해외 이주로 인해 일시불로 수령하는 연금개인계좌 내 자금, 또는 개인이 사망한 후 그가 지정한 수익자 또는 그의 법정상속인이 일시불로 수령하는 연금개인계좌 내 잔액은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개인이 상기 특수사유 이외의 사유로 연금개인계좌 내 자금 또는 잔액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월환산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5. 근로관계 해지, 조기퇴직, 내부퇴양(內部退養)에 따른 일시불 보상 소득 관련 정책  (1) 개인이 사용업체와의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사용업체가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 포함)의 경우, 해당 지역 직전연도 종업원평균급여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지 하니하며, 3배를 초과한 부분은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2) 개인이 조기퇴직 수속을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일시불 보조금 소득은 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부하여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액을 확정한 후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일시불 보조금 소득 ÷ 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 - 비용공제기준]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 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  (3) 개인이 내부퇴양(內部退養) 수속을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일시불 보조금 소득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1999]5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6.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주택 관련 정책  업체•기관(單位)이 구매가격 또는 건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종업원에게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종업원이 적게 지출한 차액 부분이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주택 판매 시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13호) 제2호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차액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얻은 액수에 월환산세율표에 따라 확정된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액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종업원이 실제로 지급한 주택구매대금과 해당 주택의 구매원가 또는 건설원가의 차액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7. 외국인 개인의 수당•보조금 관련 정책  (1)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거주민 개인의 요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개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를 받거나 <몇가지 개인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1994]20호), <외국인 개인이 취득하는 수당•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면제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7]54호) 및 <외국인 개인이 취득하는 홍콩•마카오 지역 주택보조금 등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4]29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수당•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기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외국인 개인의 선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이 불가하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개인은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수당•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8. 상기 사항 이외의 기타 개인소득세 혜택정책은 계속해서 기존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이 통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다음 각 호의 문건 또는 문건 조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1) <개인이 사용업체와의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1]157호) 제1조;  (2)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35호) 제4조 제(1)호;  (3)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주택 판매 시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13호) 제3조;  (4) <기업연금•직업연금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103호) 제3조 제1항 및 제3항;  (5) <개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 인수함에 있어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할인금 또는 보조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8]9호);  (6) <보험회사의 영업원(비(非)사원)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토지>(국세발[1998]13호);  (7) <개인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경제보상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문제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9]178호);  (8) <국유기업 종업원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0]77호);  (9)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 등의 개인소득세 과세방법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호);  (10) <보험영업원이 취득하는 중개수수료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6]454호);  (11)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개인소득세 납부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국세함[2006]902호) 제7조, 제8조;  (12)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7]118호) 제1조;  (13) <개인이 조기퇴직으로 인해 취득하는 보조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6호) 제2호;  (14) <중권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5호)  첨부 : 월 환산 종합소득세율표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12월 27일 |  | **关于个人所得税法修改后有关优惠政策衔接问题的通知**  财税〔2018〕16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  　　为贯彻落实修改后的《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现将个人所得税优惠政策衔接有关事项通知如下：  　　一、关于全年一次性奖金、中央企业负责人年度绩效薪金延期兑现收入和任期奖励的政策  　　（一）居民个人取得全年一次性奖金，符合《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个人取得全年一次性奖金等计算征收个人所得税方法问题的通知》（国税发〔2005〕9号）规定的，在2021年12月31日前，不并入当年综合所得，以全年一次性奖金收入除以12个月得到的数额，按照本通知所附按月换算后的综合所得税率表（以下简称月度税率表），确定适用税率和速算扣除数，单独计算纳税。计算公式为：  　　应纳税额＝全年一次性奖金收入×适用税率－速算扣除数  　　居民个人取得全年一次性奖金，也可以选择并入当年综合所得计算纳税。  　　自2022年1月1日起，居民个人取得全年一次性奖金，应并入当年综合所得计算缴纳个人所得税。  　　（二）中央企业负责人取得年度绩效薪金延期兑现收入和任期奖励，符合《国家税务总局关于中央企业负责人年度绩效薪金延期兑现收入和任期奖励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2007〕118号）规定的，在2021年12月31日前，参照本通知第一条第（一）项执行；2022年1月1日之后的政策另行明确。  　　二、关于上市公司股权激励的政策  　　（一）居民个人取得股票期权、股票增值权、限制性股票、股权奖励等股权激励（以下简称股权激励），符合《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股票期权所得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5〕35号）、《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股票增值权所得和限制性股票所得征收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9〕5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财税〔2015〕116号）第四条、《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股权激励和技术入股有关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6〕101号）第四条第（一）项规定的相关条件的，在2021年12月31日前，不并入当年综合所得，全额单独适用综合所得税率表，计算纳税。计算公式为：  　　应纳税额＝股权激励收入×适用税率－速算扣除数  　　（二）居民个人一个纳税年度内取得两次以上（含两次）股权激励的，应合并按本通知第二条第（一）项规定计算纳税。  　　（三）2022年1月1日之后的股权激励政策另行明确。  　　三、关于保险营销员、证券经纪人佣金收入的政策  　　保险营销员、证券经纪人取得的佣金收入，属于劳务报酬所得，以不含增值税的收入减除20%的费用后的余额为收入额，收入额减去展业成本以及附加税费后，并入当年综合所得，计算缴纳个人所得税。保险营销员、证券经纪人展业成本按照收入额的25%计算。  　　扣缴义务人向保险营销员、证券经纪人支付佣金收入时，应按照《个人所得税扣缴申报管理办法（试行）》（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61号）规定的累计预扣法计算预扣税款。  　　四、关于个人领取企业年金、职业年金的政策  　　个人达到国家规定的退休年龄，领取的企业年金、职业年金，符合《财政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年金 职业年金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3〕103号）规定的，不并入综合所得，全额单独计算应纳税款。其中按月领取的，适用月度税率表计算纳税；按季领取的，平均分摊计入各月，按每月领取额适用月度税率表计算纳税；按年领取的，适用综合所得税率表计算纳税。  　　个人因出境定居而一次性领取的年金个人账户资金，或个人死亡后，其指定的受益人或法定继承人一次性领取的年金个人账户余额，适用综合所得税率表计算纳税。对个人除上述特殊原因外一次性领取年金个人账户资金或余额的，适用月度税率表计算纳税。  　　五、关于解除劳动关系、提前退休、内部退养的一次性补偿收入的政策  　　（一）个人与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取得一次性补偿收入（包括用人单位发放的经济补偿金、生活补助费和其他补助费），在当地上年职工平均工资３倍数额以内的部分，免征个人所得税；超过3倍数额的部分，不并入当年综合所得，单独适用综合所得税率表，计算纳税。  （二）个人办理提前退休手续而取得的一次性补贴收入，应按照办理提前退休手续至法定离退休年龄之间实际年度数平均分摊，确定适用税率和速算扣除数，单独适用综合所得税率表，计算纳税。计算公式：  应纳税额={〔（一次性补贴收入÷办理提前退休手续至法定退休年龄的实际年度数）－费用扣除标准〕×适用税率－速算扣除数}×办理提前退休手续至法定退休年龄的实际年度数  　　（三）个人办理内部退养手续而取得的一次性补贴收入，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有关政策问题的通知》（国税发〔1999〕58号）规定计算纳税。  　　六、关于单位低价向职工售房的政策  　　单位按低于购置或建造成本价格出售住房给职工，职工因此而少支出的差价部分，符合《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单位低价向职工售房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7〕13号）第二条规定的，不并入当年综合所得，以差价收入除以12个月得到的数额，按照月度税率表确定适用税率和速算扣除数，单独计算纳税。计算公式为：  　　应纳税额＝职工实际支付的购房价款低于该房屋的购置或建造成本价格的差额×适用税率－速算扣除数  　　七、关于外籍个人有关津补贴的政策  　　（一）2019年1月1日至2021年12月31日期间，外籍个人符合居民个人条件的，可以选择享受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也可以选择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若干政策问题的通知》（财税〔1994〕20号）、《国家税务总局关于外籍个人取得有关补贴征免个人所得税执行问题的通知》（国税发〔1997〕54号）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外籍个人取得港澳地区住房等补贴征免个人所得税的通知》（财税〔2004〕29号）规定，享受住房补贴、语言训练费、子女教育费等津补贴免税优惠政策，但不得同时享受。外籍个人一经选择，在一个纳税年度内不得变更。  　　（二）自2022年1月1日起，外籍个人不再享受住房补贴、语言训练费、子女教育费津补贴免税优惠政策，应按规定享受专项附加扣除。  　　八、除上述衔接事项外，其他个人所得税优惠政策继续按照原文件规定执行。  　　九、本通知自2019年1月1日起执行。下列文件或文件条款同时废止：  　　（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与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取得的一次性补偿收入征免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1〕157号）第一条；  　　（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股票期权所得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5〕35号）第四条第（一）项；  　　（三）《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单位低价向职工售房有关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7〕13号）第三条；  　　（四）《财政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年金职业年金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3〕103号）第三条第1项和第3项；  　　（五）《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认购股票等有价证券而从雇主取得折扣或补贴收入有关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1998〕9号）；  　　（六）《国家税务总局关于保险企业营销员（非雇员）取得的收入计征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1998〕13号）；  　　（七）《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因解除劳动合同取得经济补偿金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1999〕178号）；  　　（八）《国家税务总局关于国有企业职工因解除劳动合同取得一次性补偿收入征免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2000〕77号）；  　　（九）《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个人取得全年一次性奖金等计算征收个人所得税方法问题的通知》（国税发〔2005〕9号）第二条；  　　（十）《国家税务总局关于保险营销员取得佣金收入征免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函〔2006〕454号）；  　　（十一）《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股票期权所得缴纳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补充通知》（国税函〔2006〕902号）第七条、第八条；  　　（十二）《国家税务总局关于中央企业负责人年度绩效薪金延期兑现收入和任期奖励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2007〕118号）第一条；  　　（十三）《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提前退休取得补贴收入个人所得税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6号）第二条；  （十四）《国家税务总局关于证券经纪人佣金收入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5号）。  附件：按月换算后的综合所得税率表  财政部  税务总局  　　 2018年12月27日 |